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81호
- 나. 발 의 자 : 김정 의원 외 16명
- 다. 발의일자 : 2025년 3월 31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2. 제안이유

- 2024년 9월부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별적으로 육성 중이던 전통문화산업을 탈피하고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과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서울시가 보유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
- 특히,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서울특별시가 전통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서 전통문화의 진흥으로 목적의 범위를 확장하여, 관광을 포함 교육, 콘텐츠 등 전통문화를 계승한 전 분야의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주요내용

- 가. 관련 상위법령에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1조).
- 나.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전통문화를 활용한 사업을 “관광자원화 개발지원”에서 “전통문화 개발지원”으로 변경·확대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활용한 산업 분야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제정·시행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을 관계법령으로 명기하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를 활용한 각종 분야의 산업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과거 보존 및 계승 대상으로 인식되어 오던 전통문화는 현재 한류 열풍에 영향을 받아 전략적인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2023년 9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2024년 9월부터 시행 중임.

-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한류의 영향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것에 비해 실제 인지도와 경험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2024년도 몫즈¹⁾ 매출액이 213억 원으로 2020년도 38억 원 대비 465% 증가했다고 발표하여 전통문화를

1)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엄'과 상품을 뜻하는 '굿즈'의 합성어로 박물관 기념품 상점에서 판매되는 상품

활용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증명한 바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은 서울시가 보유한 전통문화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로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음.

다. 주요 내용별 검토

(1) 조례의 근거 법률 추가(안 제1조)

- 안 제1조는 현행 조례의 근거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에 전통문화 자체에 초점을 두었던 정책에서 전통문화를 활용한 산업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의 근거임을 명시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 ----- ----- ----- -----.

- 현재 전통문화와 관련된 개별 조례로는 김치, 씨름, 태권도 등 일부 분야에 국한하여 제정·시행되고 있어 이외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전통문화의 진흥과 이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총괄 부서 또한 부재한 상황임.

< 전통문화 관련 개별 조례 현황 >

조례명	제정연도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	2016	농수산유통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6	한옥건축자산과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2021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2021	체육진흥과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2023	체육정책과

- 따라서 동 개정안은 그동안 문화산업의 한 분야에 불과하여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산재되어 있던 전통문화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2) 전통문화산업의 개발·지원(안 제3조 및 제6조)

- 현행 조례가 전통문화 활용 산업을 ‘관광’으로 한정하였던 것에 비해 안 제3조 및 제6조는 ‘전통문화산업’으로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관련 분야를 통합하여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신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개인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시장은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전통문화 개발지원) ----- -----전통문화산업 개발을----- ----- ----- 1. ~ 2. (현행과 같음) 3. -----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 ‘관광’은 전통예술과 전통생활양식을 의미하는 전통문화²⁾보다는 국가유산³⁾ 및 시지정유산⁴⁾을 활용하여 방문 및 관람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역사문화유산 정비, 체험형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방문 증대를 위한 방안에만 치중해 있는 형편임.

- 한편, 지난 3년간 서울역사박물관의 문화상품 판매량을 살펴보면, 2022년도 1,100만 원, 2023년도 1,500만 원, 2024년도 1,900만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도록을 제외한 기념품의 판매액은 사실상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기념품의 종류에 큰 변화가 없어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2022~2024년도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상품 판매현황 >

(단위: 원)

구분	기념품	도록	합계	비고
2022년도	2,407,200	8,173,000	10,580,200	·코로나19 中
2023년도	6,334,400	9,156,000	15,490,400	
2024년도	6,022,700	13,462,000	19,484,700	·9월까지 판매량

-
- 2)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전통예술, 전통생활양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 4)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시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지정자연유산(이하 “국가 지정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을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의 구분에 따라 **시지정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 한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전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K-컬처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 이와 같이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령, 정책환경 및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동 개정안은 이를 반영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와 더불어 이를 활용한 각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됨.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심형준(2180-8116)
------	----------------	-------	----------------

의안번호 2581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경 의원		2025.3.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개정 필요성〉 ○ '24.9월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23.9월 제정)에 따라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주요 입법 요지〉 ○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목적 개정(안 제1조) ○ 전통문화 계승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개발지원 내용 명시(안 제6조)					
추진경과	○ '25. 3. 31.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 서 검토의견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동 조례 개정으로 전통문화가 보존과 계승의 가치를 넘어 전통문화산업 육성 등 전통문화의 폭넓은 활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함					
대응방안	○ 이견 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팀장	이남재(☎2133-2512)	담당	김근형(☎2133-2516)	